농림축산식품부

시정요구·통보

제　　목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소홀

기 관 명 강서구, 기장군

내　　용

부산광역시에서는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투기적 행위를 막아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나,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납부기한(10일 이내)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해야 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의 매각은 공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시·군·구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군에서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표】와 같이 총 308건, 4,129,279,940원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된 상태로 있다.

【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현황(2016.12월)

부과권자	건수	부과금액(A)	납부금액(B)	체납금액(A-B)
계	308	4,436,187,850	306,907,910	4,129,279,940
강서구	257	3,957,335,850	271,238,480	3,686,097,370
기장군	51	478,852,000	35,669,430	443,182,570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4,129,279,940원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 대행, 조건부 무재산 결손처리, 관련부서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시·군·구의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